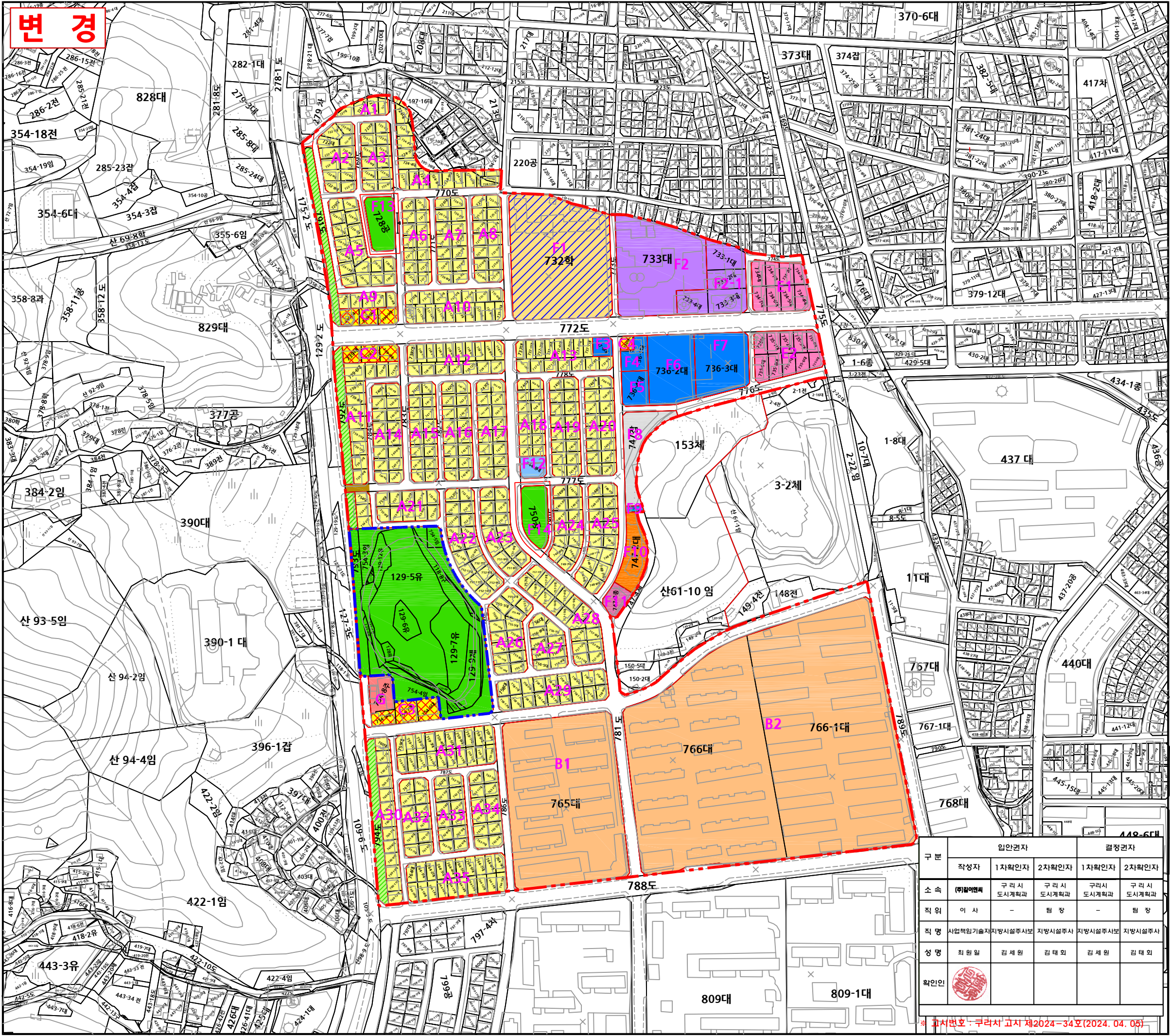




변경

교문 1지구

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

- 범례
- 단독주택용지
 - 공동주택용지
 - 근린생활시설용지
 - 상업용지
 - 학교
 - 유치원
 - 공원
 - 녹지
 - 주차장
 - 유수지
 - 주유소
 - 종교시설
 - 수도공급시설
 - 공공청사
 - 업무시설,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
 - 보행자전용도로
 - 획지경계선
 - 도로
 - 차량출입허용구간
 - 지구단위계획구역

■ 가구 및 획지계획

구분	도면번호	허용용도
단독주택용지	A1~A35	2개 획지내에서 획지간 합병은 가능 합병한 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획지경계로 분할
공동주택용지	B1, B2	
근린생활시설용지	C1~C4	
상업용지	E1, E2	
공공시설용지	F1~F12, F13, F14, G, F2-1	

* 본도면은 변경부분에 한하여 유효함.

구분	입안권자		결정권자	
	작성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	1차확인자
소속	(주)밀어맨서	구리시 도시계획과	구리시 도시계획과	구리시 도시계획과
직위	이사	-	팀장	-
직명	사업책임기술자	지방시설주사보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주사보
성명	최원일	김세원	김태희	김세원
확인인				

* 고시번호 : 구리시 고시 제2024-34호(2024. 04. 05)

